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1. 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신청기간 및 시간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신청기간: 2023. 8. 24.(목) ~ 9. 8.(금)
 - ※ 상기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업무시간: 09:00 ~ 17:00 (※ 원서접수처는 점심시간이 없으나, 서류 발급 행정기관은 점심시간이 있으므로 참고)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2. 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신청 장소

-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출신 고등학교에 접수하는 대신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 기타 학력 인정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 장기입원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중 희망하는 장소
 -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수험생
 - 특수학교 졸업(예정)자: 출신(재학) 학교
 - ※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서울삼성학교, 한빛맹학교만 해당
 - 일반학교 및 기타 특수학교 졸업(예정)자
 - 중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중부교육지원청
 -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남부교육지원청
 - 경증 청각장애 등 수험생: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 ※ 응시원서 작성내역 변경 신청 및 정정은 원서접수처와 동일한 곳에서 실시함

3. 시험지구

시험지구	관할 자치구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전화번호
동부	동대문, 중랑	동부교육지원청	02-2210-1244
서부	마포, 서대문, 은평	서부교육지원청	02-3905-544
남부	구로, 금천, 영등포	남부교육지원청	02-2165-0257
북부	노원, 도봉	북부교육지원청	02-3499-6844
중부	용산, 종로, 중구	중부교육지원청	02-708-6536
강동송파	강동, 송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02-3434-4336
강서양천	강서, 양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02-2600-0842
강남서초	강남, 서초	강남서초교육지원청	02-3015-3334
동작관악	관악, 동작	동작관악교육지원청	02-810-8343
성동광진	광진, 성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02-2286-3634
성북강북	강북, 성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02-944-9332

4.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 서류

- 응시원서(기록용) 1부 (원서 접수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 (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 교육지원청 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카드 및 기타 납부 불가)

응시 영역 수	4개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원)	37,000	42,000	47,000

- 신분증 (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능),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첨부),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함.

< 사진규격 >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3. 2. 25.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나. 추가 제출 서류(아래 대상자에 한함, ※ 모든 추가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대상자 공통) ①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 지원청에 접수하는 경우(현재 주소지가 출신학교 소재지와 다른 경우 가능) 또는 ②수험생이 기타 아래 해당사유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 주민등록초본(원본, 주소 확인용, 2023. 7. 25. 이후 발급) 1부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된 것으로 제출하며, 주소 확인용 증빙서류는 지원자 가족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기본으로 하되 지원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허용
 -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졸업증명서(졸업생) 각 1부(※ 검정고시합격자는 제외)
- ※ 졸업증명서(2022. 8. 25. 이후 발급)는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된 원본 제출
- 대상자별 제출 서류

대상자	증빙서류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직업계열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 1부 (단, 출신 또는 재학 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직업계열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는 시행세부계획공고일(2023. 7. 3.) 이후 발급
검정고시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2022. 8. 25. 이후 발급) 1부
기타 학력 인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례별 증빙서류 1부 (단, 기타 학력 인정자 중 외국 학력 인정자가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과거 제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외국 학력 인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1부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학년제 확인 용도)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의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영사확인(해당 학교의 학력인정 여부 확인 목적)을 받아 한글 번역 공증한 서류를 제출 ※ 외국학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에 대해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 따른 번역인(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서 규정한 "번역인"(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이 번역한 서류를 공증인(공증인기를 받은 법률사무소)에게 공증 ○ 국내 최종학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 ※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재외 한국 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
시험편의제공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단, 시각장애 제6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및 시각장애 제6급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재등급

대상자	증빙서류																		
	<p>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장구 가능) -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 <p>○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p> <p>※ 진단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22. 8. 25. 이후)에 발급</p> <p>※ 시험편의제공대상 유형별 세부 제출 서류 참고(붙임)</p>																		
<p>군복무자</p>	<p>○ 군복무확인서(증명서) 1부</p> <p>※ 단,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p> <table border="1" data-bbox="454 846 1412 952"> <thead> <tr> <th>구분</th> <th>발급대상</th> <th>발급처</th> </tr> </thead> <tbody> <tr> <td>군복무확인서(증명서)</td> <td>입대 후 한 달이 지난 군인</td> <td>해당 부대</td> </tr> <tr> <td>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서)</td> <td>입대 후 한 달 이내에 해당하는 훈련병 등</td> <td>정부24 및 인근 주민센터</td> </tr> </tbody> </table> <p>※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 기재된 군복무확인서를 신분확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를 함께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부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에 접수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신 고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에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도 허용(단, 대리접수에 한함.) <table border="1" data-bbox="454 1149 1412 1265"> <thead> <tr> <th>구분</th> <th>부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th> <th>출신고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th> </tr> </thead> <tbody> <tr> <td>본인 접수</td> <td>군복무확인서 제출</td> <td>신분증(출신고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제출</td> </tr> <tr> <td>대리 접수</td> <td>군복무확인서 제출</td> <td>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td> </tr> </tbody> </table>	구분	발급대상	발급처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입대 후 한 달이 지난 군인	해당 부대	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서)	입대 후 한 달 이내에 해당하는 훈련병 등	정부24 및 인근 주민센터	구분	부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출신고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본인 접수	군복무확인서 제출	신분증(출신고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제출	대리 접수	군복무확인서 제출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구분	발급대상	발급처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입대 후 한 달이 지난 군인	해당 부대																	
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서)	입대 후 한 달 이내에 해당하는 훈련병 등	정부24 및 인근 주민센터																	
구분	부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출신고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본인 접수	군복무확인서 제출	신분증(출신고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제출																	
대리 접수	군복무확인서 제출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p>입원중인 환자</p>	<p>○ 입원확인서 1부</p>																		
<p>수형자</p>	<p>○ 수감확인서 1부</p>																		
<p>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p>	<p>○ ①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와 ②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p> <table border="1" data-bbox="454 1529 1412 1899"> <thead> <tr> <th>구분</th> <th>제출 서류</th> </tr> </thead> <tbody> <tr> <td>국민기초생활수급자</td> <td>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td> </tr> <tr> <td rowspan="5">법정차상위계층</td> <td>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td> </tr> <tr> <td>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td> </tr> <tr> <td>자활근로자 확인서</td> </tr> <tr> <td>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td> </tr> <tr> <td>차상위계층 확인서</td> </tr> <tr> <td>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td> <td>한부모가족 증명서</td> </tr> </tbody> </table> <p>※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3. 7. 25.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p> <p>○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p>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대상자	증빙서류	
	구분	제출 서류
	<p>'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된 학생</p> <p>※ 연중(교육비 지원 자격 심사 이후) 수급자격 변동내역이 있는 재학생의 경우 수험생 본인이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음</p> <p>① 관할 보장기관(행정관청)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 신청과 더불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도 신청해야 함.</p> <p>② 추후 보장기관(행정관청)으로부터 급여 심사 결과를 통지 받으면 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p>	없음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되지 않은 학생	해당 증명서 제출

5. 응시원서 대리접수

구분	내용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접수의 예외 사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대리접수자는 응시자의 직계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등에 한하여 허용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형제, 자매 등)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리접수서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서울시교육청 및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 ② 관련 증빙서류: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고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에 대리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확인서 대신 병적증명서도 허용 ③ 대리 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 접수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 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인 경우(지원자가 수형자인 경우):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접수사실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3. 7. 25. 이후) 발급

〈붙임〉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유형별 원서 접수 제출 서류

□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구분	대상	제출 서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 장애인	○ 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상 시각장애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①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②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①+②) 첨부
	○ 20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상 시각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구분	대상	제출 서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 장애인	○ 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상 시각장애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로 제작된 문제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 20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상 시각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로 제작된 문제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 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상 시각장애 제4급부터 제5급까지에 해당하는 수험생	○ ①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②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③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①+②+③) 첨부
	○ 20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상 시각장애 정도가 “경증”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 장애인	○ 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상 시각장애 제6급에 해당하는 수험생	○ ①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②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③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를 함께(①+②+③) 첨부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는 수험생	○ ①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②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①+②) 첨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 장애인	○ 20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상 시각장애 정도가 “경증”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 ①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②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③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를 함께(①+②+③) 첨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는 수험생	○ ①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②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①+②) 첨부

□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구분	제출 서류	비고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경우,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 장애인증명서 ※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3. 7. 25.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함.	
손, 목, 눈 등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수험생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	

□ 청각장애 수험생

구분	대상	제출 서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 장애인	○ 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상 청각장애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 20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상 청각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 장애인	○ 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상 청각장애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 ①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②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③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①+②+③) 첨부
	○ 20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상 청각장애 정도가 ‘경증’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 ①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②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③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①+②+③) 첨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는 수험생	○ ①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②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①+②) 첨부